

식품위생 감시현황과 대책

보건사회부 위생감시과
課長 沈 漢 燮

1. 현 황

가. 대상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과자류, 청량음료, 두부, 육가공품제조업등 24개 업종

- 판매·운반처리업소: 유류판매업, 식육 판매업 등 6개업종
- 식품접객업소: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과자점, 다방등 5개업종
- 환경접객업소: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탕업, 유기장업 등 7개업종

계	식품제조·가공업소	판매 운반처리업소	식품 접객업소	환경 접객업소
430,881개소	16,398	44,722	229,762	139,999

나. 식품위생증사 공무원 현황

구분	정 원	현 원	감시원증소지자	비고
계	1,085	1,036	550	

대한다방조합연합회	398	
축산기업조합중앙회	596	
대한제과협회	146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 연합회	26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17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3	
대한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2	
한국이용사회중앙회	536	
대한미용사회중앙회	380	
대한숙박업중앙회	404	
한국목욕업중앙회	203	
대한당구협회	123	
한국전자유기장협회	251	

다. 지도단속체계

- 행정기관 지도단속
 - 단속기관: 보건사회부, 시·도(환경위생과) 시·군·구(위생과, 사회과 위생계)
 - 단속회수
 - 정기: 연 2회
 - 특별: 수시단속 실시
- 업종단체 자율지도
 - 자율지도 승인 단체

단 체 명	자율지도원	비고
합 계	3,655명	
대한요식업중앙회	550	

- 자율지도원의 직무

-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하는 자율지도규

정에 의거 정기 및 수시지도
 • 식품위생법에 의한 임검사항 및 시설기

준지도등
 • 지도점검결과 행정기관에 통보

라. 지도단속 실적

1986. 12. 31 (단위 : 개소)

구 분	단속건수	적 합	부적합	부 적 합 내 용				고 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경고등	허 가	무허가
계	758,524	609,243	149,281	15,014	11,408	63,529	59,330	533	10,631
식품 접객업소	447,923	345,954	101,969	10,156	6,015	43,803	41,995	168	7,838
식품제조가공업소	23,757	18,671	5,086	436	981	1,878	1,791	18	412
환경 접객업소	241,645	206,439	35,206	3,629	4,114	15,794	11,669	328	2,200
판매운반처리업소	45,199	38,179	7,020	793	298	2,054	3,875	9	181

2. 문제점

가. 영업주 및 종사자

- 식품제조업소
 - 제조기술 미약
 - 경영규모의 영세성
 - 종사자의 위생관념 미흡
- 식품접객업소
 -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국민 향락추구로 유흥업소 증가
 - 종사자의 평생 직업의식 부족(일시적 종사)
 - 시설미흡 및 종사자의 위생관념 미흡
 - 준법정신보다는 이용객의 취향에 편승하여 퇴폐, 변태영업
- 환경접객업소
 - 업주와 종사자의 무분별한 영리추구
 - 영업주의 직업윤리의식 결여
 - 이용객의 퇴폐성향에 적극적인 편의제공으로 수익증대 집착

나. 소비자(고객)

-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일시적인 향락 추구 경

향

- 일부 저소득층의 열가제품 선호 경향
- 위반사항에 대한 시민의 고발정신 미흡
- 제품의 선택능력 부족

다. 지도단속

1) 행정분야

- 지도단속 공무원의 인력 부족
 - 소요인력 2,183명에 대하여 현재 550명으로 1,600여명 부족
 - * 현재 1인당 감시대상업소 : 783여개소임
- 위생감시원의 전문성 결여
 - 위생관계 종사 공무원은 1,068명이나 감시원 자격자는 550명에 불과함
- 위반행위가 많은 야간 감시 곤란
- 감시 공무원 의지 및 사명감 결여
 - 지역사회의 친분등으로 단속기피 묵인
 - 대도시의 경우 빈번한 인사 전보로 근무기간중 지역사회내의 원성회피 심리 내재
- 업종단체별 자율지도 기능 미흡
 - 자율지도원의 인원 및 자질부족
 - 자율지도와 권위의식으로 인한 마찰

- 자율지도와 행정감시의 보완 체계 미흡
 - 자율지도 우수업소에 대한 행정감시 감면등 우대조치 미정착
 - 일선기관에 자율지도에 대한 불신

3. 개선대책

가. 목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효율적으로 지도관리하여 위생적으로 제조된 우수한 식품을 공급하고接客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의 증진과 '88서울올림픽에 대비

나. 기본방향

- 부정·불량식품 발생요인의 근원적 제거
 -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조과정 중점지도 강화
 - 취약업소, 사회적 문제식품 중점관리
 - 표시기준 및 과대광고 행위 단속
- 接客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도모
 - 주방, 화장실등 위생 시설개선 지도강화
 - 주문식단체 정착지도
 - 준수사항 철저히 이행유도
 - 퇴폐, 반대행위 중점단속
- 무허가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등 최고행정처분
 - 무허가 업소는 지속적인 고발로 무허가 영업행위 근절
- 교육 및 홍보 강화
 - 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에 관한 사명의식 고취 교육
 - 대국민 홍보 활성화 및 고발신고운영센터 적극 활용
- 지도단속체계 확립
 - 위생감시원의 점진적인 보강 및 전문요원화 유도
 - 업종별 직능단체 자율지도 활동 내실화
- 지방자치단체와 자율지도결과 의 평가

다. 개선대책

1) 단속계획

가) 부정, 불량식품 근절

- 제조업소 지도점검의 내실화
 - 자가품질관리 제도의 정착 유도
 - 제조시설이 현대화 되도록 유도하고 시설환경의 청결여부와 제조공정의 합리성에 유의하여 지도
 - 원료구입과정, 제조과정, 품질관리등 중점단속
- 취약지(업소)유통식품 중점지도관리
 - 시장 및 학교주변, 저소득층주거지역, 유원지등에서 부패변질, 무표시식품등의 취급이 예상되는 지역의 업소를 취약업소로 지정 중점관리
- 표시기준 및 과대광고 지도단속
 - 소비자가 제품의 내용과 품질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표시사항과 광고내용을 정밀히 조사확인
- 수거검사를 통한 식품 품질 보장
 - 업종 및 품목별로 월별 수거계획을 수립, 년중 수거하여 불량제품 유통방지
 - 나)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등 최고행정처분사항 사후확인 철저
- 무허가업소 및 퇴폐업소는 지속적인 고발로 무허가 및 퇴폐영업 근절
 - 고발할 경우 고발장에 종전 고발사실등 중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 2) 홍보 교육강화
- 관련분야(보건교육, 민간활동, 학교교육, 언론기관등)와 협조로 효과적인 국민계몽
- 제조업소 및 식품接客업소 종사자 교육의 내실화
 - 법정 교육시간 이수 및 전문적인 강사 선정

○ 소비자고발 유도

- 고발신고센터의 활성화
- 소비자보호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소비자보호 운동

3) 지도단속체계 확립

○ 행정기관별 주요 감시활동 범위

- 보건사회부
 -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첨가물등 식품제조업소(7종) 지도단속
 - 단속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특별지시사항 지도단속
 - 시·도 단속사항 확인점검 및 분석평가
-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
 - 중앙의 특별지시사항
 - 민원사항 처리

○ 위생감시의 활성화

- 위생감시 전문 인력의 점진적인 증원

'87	'88	'89	'90	'91
600명 (55)	900 (300)	1,100 (200)	1,300 (200)	1,500 (200)

○ 위생감시 소요인력 판단

구분	감시대상업소	연간법정 점검 소요 회 수	일 일 점 검 가 능 업 소	연간소요인원
계	430,881개소			1,457명
제조·가공업소	16,398	2 회	2 개소	131
판매·운반업소	44,722	2 회	5 개소	143
식품 접객업소	229,762	2 회	5 개소	735
환경접객업소	139,999	2 회	5 개소	448

○ 연간소요인원 = 감시대상업소수 × 법정 점검회수 ÷ 일일점검가능업소수 ÷ 250 × 2

○ 수시중점 단속 소요인원

- 정기점검업무량의 50% 기준 = 726명

○ 부족인원

- 위생감시원의 교육훈련 증대와 내실있는 교육제도 확립

- 무사안일 부조리 방지
- 효율적인 단속능력 제고
- 적출사항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 업종별 직능단체 자율지도 기능 내실화

- 전문적인 자율지도원 확보
 - 자율지도원의 반복교육 강화
 - 자율지도 결과를 행정기관에 신속히 통보
- 행정기관의 위생감시와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기능 연계
- 중복적인 지도단속 방지
 - 자율지도 결과 적출된 문제점에 대한 행정기관의 신속한 처리

지도점검 결과 평가제도 도입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도점검한 실적을 중앙에서 분석 평가
- 자율지도 결과를 각 행정기관별 분석 평가
- 매년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익년도 단속계획에 반영
- * 분석, 평가방법은 한국인구보건연구원과 협의